

1. 홈스쿨 유형별 오픈 절차

1)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서 홈스쿨을 창업하는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라 하고, 주거지가 아닌 곳(상가)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교습소'라 한다. 개인과외교습은 해당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형태에 따라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안내를 보면 각각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여 합법적인 홈스쿨을 운영하도록 한다.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비교>

구분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학습자 수	동시 9인까지	동시 9인까지
강사 수	강사를 둘 수 없음	강사를 둘 수 없음
시설 기준	제한 없음	1㎡당 0.3인 이하 교습 가능 (약 3.3~30㎡)
교습과목 제한	제한 없음	한 과목만 가능
교습자 자격	제한 없음	전문대학 졸업 이상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2층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교육환경 정화 규정	적용 안 함	적용
수강료 표시, 게시제	부분적용 (게시하거나 학부모 요청 시 제시)	적용
수강료 조정 명령	적용	적용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칙 규정	적용	적용

2) 신고방법과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 신청방법 : 해당 관할 교육청 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 (교육청에 비치,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진(3cmx4cm) 2매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유의사항 :

-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 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 개인과외 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교습소]

▶ 신청방법 : 해당 관할 교육청 방문

▶ 구비서류 (처리기한 5일) :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대학졸업이상의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자격증 등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소유시) : 건물임대계약서 원본 또는 무상사용승낙서(인감 도장 날인)
- 사진(3cmx4cm) 2매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방문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검토내용:

- 서류검토 :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 교습자 자격 : 1년 이내 불법운영으로 인하여 동일한 교습과목을 폐지처분 받은 자가 아닌가?
강사자격은 준수하는지?
- 건축물 용도 : 건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직통계단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거실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였는가?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유해업소 : 동일건축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는 없는가?
- 이중등록 : 교습소설립예정지가 기존에 다른 학원(교습소)가 등록되어 무단폐원한 곳은 아닌가?
- 시설·설비 : 시설 및 설비현황은 적합한가?
- 인원 :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은 적정한가?
- 명칭 (나이스 확인) : 다른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 유의사항 :

-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해야 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교습소 강의실의 1㎡ 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여야 한다.
(1평에 1명 정도 수용)
- 교습자는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습자, 위치, 교습과목 등을 변경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 건축임대 및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과 예정 시설평면도를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 세부 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한 후 교습소 설립을 준비하도록 한다.
-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폐원 시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교습소신고증명서는 교육지원청에 반납 후 폐원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